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77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윤영석 · 박덕흠 · 구자근
김대식 · 박성훈 · 조경태
김태호 · 정동만 · 우재준
곽규택 · 백종현 · 조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우울·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1.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및 개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배치 또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2.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 및 예방
3.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4. 또래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5. 그 밖에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조기

발견·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문인력이 학교를 순회하며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업무 범위 및 운영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조의4(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u> <u>2.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 및 예방</u> <u>3.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u> <u>4. 또래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u> <u>5. 그 밖에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u>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및 운영</u></p>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조기발견·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문인력이 학교를 순회하며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또는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임상심리사

<신 설>

<신 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

⑥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지
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
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
른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업무
범위 및 운영 방식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